

한국콜마(주) 내부거래위원회 규정

제 1 장 총칙

제1조 (목적)

이 규정은 한국콜마 주식회사(이하 "회사"라 한다)가 정관 제 37 조의 2 제 1 항 제 4 호에 따라 이사회 내에 설치한 내부거래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의 조직과 운영, 권한 및 책임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」(이하 "공정거래법"이라 한다) 등 관계 법령의 자율준수 및 회사의 내부거래 투명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 (적용범위)

위원회의 조직과 운영, 권한 및 책임에 관한 사항은 정관, 이사회 규정 및 관계 법령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제3조 (권한)

위원회는 회사와 「공정거래법」 상 특수관계인(계열회사를 포함한다. 이하 같다) 간의 내부거래에 대하여 사전 심사·승인할 권한을 가지며, 그 거래의 적법성 및 공정성을 감독한다.

제 2 장 구성

제4조 (구성)

- ① 위원회는 3 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며, 위원 총수의 3 분의 2 이상은 독립이사로 한다.
- ② 위원회의 위원은 이사회의 결의로 선임한다.
- ③ 위원의 임기는 해당 이사의 임기로 한다.

제5조 (위원장 및 직무대행)

- ① 위원장은 독립이사인 위원 중에서 위원회 결의로 선임한다.
- ② 위원장이 사고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현저히 어려운 때에는 회사의 이사 재직기간이 가장 긴 독립이사인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, 재직기간이 동일한 경우에는 연장자 순에 따른다.

제6조 (해임 및 결원)

- ① 위원의 해임은 이사 총수의 3 분의 2 이상의 이사회 결의로 한다.

② 위원의 해임, 임기만료 또는 일신상의 사유 등으로 위원회에 결원이 발생한 경우 이사회는 지체없이 위원회 참여에 결격 사유가 없는 이사를 위원으로 신규 선임한다. 다만, 제 4 조 제 1 항을 충족하는 잔여 이사가 없을 경우 그 결원이 생긴 날로부터 최초로 개최되는 주주총회에서 신규 이사를 선임하고, 이어 개최되는 이사회에서 신규 위원을 선임한다

제 3 장 운영

제7조 (회의의 종류)

- ① 위원회는 정기위원회와 임시위원회로 한다.
- ② 정기위원회는 매 분기별 1 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필요한 경우 위원장이 변경할 수 있다.
- ③ 임시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.

제8조 (소집권자)

-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. 다만, 위원장이 사고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현저히 어려운 때에는 제 5 조 제 2 항에 따른 직무대행자가 소집한다.
- ② 각 위원은 위원장에게 의안과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. 위원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상당한 기간 내에 위원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집을 청구한 위원이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.

제9조 (소집절차)

- ① 위원회를 소집함에는 회일을 정하고 그 회의일의 1 주일 전까지 각 위원에 대하여 문서, 모사전송기(FAX), 유선, 전자메일(E-mail) 등의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.
- ② 위원 전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제 1 항의 절차를 생략하고 언제든지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.

제10조(의안의 제출)

- ① 위원회에 상정할 의안과 그 제안이유는 해당 부서에서 작성하여 회의일 1 주일 전까지 위원회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- ② 간사는 제출된 의안의 문안을 검토한 후 이를 위원회에 상정한다.

제11조(결의방법)

① 위원회의 결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. 다만, 관계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수단 등을 이용하여 위원회를 진행할 수 있다.

② 위원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. 이 경우 해당 위원은 의사정족수 산정에는 포함하되, 의결정족수 산정에는 산입하지 아니한다.

제 4 장 권한 및 의무

제12조(의결사항)

① 위원회는 이사회로부터 위임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. 다만, 상법 제 393 조의 2 제 2 항에 따라 위원회가 의결할 수 없는 사항 및 이사회가 의결하기로 한 사항은 제외한다.

1. 회사와 계열회사간 가지급금 또는 대여금 등 자금을 제공하거나 거래하는 행위로서 거래금액이 100 억원 이상인 거래
2. 회사와 계열회사간 주식 또는 회사채 등 유가증권을 제공하거나 거래하는 행위(사채발행, 유상증자, 주식취득 등을 포함한다)로서 거래금액이 100 억원 이상인 거래
3. 회사와 계열회사간 부동산 또는 무체재산권 등 자산을 제공하거나 거래하는 행위(처분·양도·양수를 포함한다)로서 거래금액이 100 억원 이상인 거래. 다만, 상법 제 374 조 제 1 항에 따라 같은 법 제 434 조에 따른 결의가 필요한 경우는 제외한다.
4. 동일인 및 동일인 친족 출자 계열회사를 상대방으로 하거나 이들을 위한 상품·용역거래 중 거래상대방별로 분기에 이루어질 거래금액의 합계가 100 억원 이상인 거래
5. 그 밖에 「공정거래법」 제 26 조 제 1 항에 따라 공시의무가 발생하는 대규모 내부거래

② 제 1 항에 열거되지 아니하였으나 관계 법령 등에 따라 또는 사업적 측면에서 위원회 의결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중요한 거래의 경우 위원장은 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하고 의결을 요청할 수 있다.

제13조(보고사항)

위원회는 회사와 계열회사 간의 내부거래에 대한 현황을 보고받을 수 있으며, 위원회 간사는 중요한 거래 사항을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
제14조(직권조사 및 시정조치 건의권)

① 위원회는 회사와 계열회사 간 거래의 적법성·공정성에 대하여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다.

- ② 위원회는 조사 결과 부당한 사항이 발견된 경우 이사회에 시정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.
- ③ 위원회는 권한 행사에 필요한 경우 회사의 임직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으며, 외부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.

제15조(위원의 의무)

- ① 위원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.
- ② 위원은 직무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회사의 영업상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. 이 의무는 위원의 직을 떠난 후에도 동일하다.

제16조(통지의무)

- ① 위원회는 결의된 사항을 지체없이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- ② 통지를 받은 각 이사는 이사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위원회에서 결의된 사항에 대하여 이사회는 이를 다시 결의할 수 있다.

제 5 장 기 타

제17조(의사록)

- ① 위원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고 보관하여야 한다.
-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, 경과요령, 그 결과,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.

제18조(간사)

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 명을 두며, 간사는 회사의 관련 부서장이 담당한다.

제19조(경비)

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회사가 부담한다.

제20조(규정의 제·개정 및 폐지)

이 규정의 제정, 개정 및 폐지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한다.

부 칙

제 1 조 (시행일)

이 규정은 2026 년 6 월 24 일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사외이사에서 독립이사로 명칭이 변경된 제 4 조 및 제 5 조의 규정은 2026 년 7 월 23 일부터 시행한다.